

6/8 306

대 법 원

2000. 5. 31	원본영수	인
2000. . .	판결송달	인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0다11959 손해배상(기)

원고, 피상고인 강 현 일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, 이상훈

피고, 상고인 대 한 민 국

법률상 대리인 법무부장관 김 정 길

소송수행자 이호국, 백우현

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0. 1. 25. 선고 99나42574 판결

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.

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있어서,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

할 뿐더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위 법
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0. 5. 31.

재판장 대법관 신성택 _____

대법관 지창권 ____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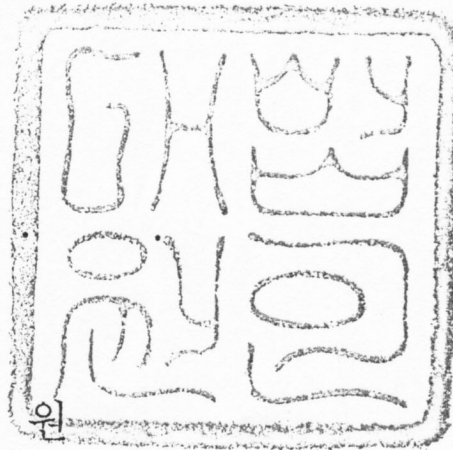
대법관 서성 _____

주심 대법관 유지담 _____

정본입니다.

200 2000.6. 0 3 .

대 법



법원사무관 박 재 근

